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7
----------	-----

제안이유

-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용어정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첨 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감이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따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u>교육규칙으로</u> -----</p>